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정	1968-03-07	체육장학회규정 제정
제정	1974-12-16	경기력향상연구복지기금운영규정 제정
제정	1982-07-16	체육인연금운영규정 제정
제정	1982-12-22	체육인복지기금운영규정으로 개정
개정	1983-02-21	규정개정
개정	1984-09-06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으로 개정, 사체1051-4004
개정	1987-04-25	사체2591-1738호
개정	1988-10-15	사체2591-4168호
개정	1990-04-18	체육부 지총2598-1808호
개정	1992-12-26	체육청소년부 지총25980-670호
전문개정	1993-12-28	문화체육부 협총82300-807호
개정	1994-07-27	문화체육부 협총85300-400호
개정	1995-10-06	문화체육부 협총82320-407호
개정	1998-09-12	문화관광부 체정82320-331호
개정	1999-11-11	문화관광부 체정84210-167호
개정	2000-07-10	문화관광부 체정82320-443호
개정	2000-12-11	문화관광부 체정82320-731호
개정	2001-11-05	문화관광부 체정82340-522호
개정	2002-11-09	문화관광부 체정82340-578호
개정	2004-01-26	문화관광부 체육정책과-146호
개정	2004-12-02	문화관광부 체육정책과-3158호
개정	2006-01-03	문화관광부 체육정책과-2926호
개정	2006-12-11	문화관광부 체육정책팀-1129호
개정	2007-06-28	문화관광부 체육정책팀-2018호(정관)
개정	2007-11-28	문화관광부 체육정책팀-3590호
개정	2008-11-1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2964호
개정	2009-07-06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2931호
개정	2011-09-0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3509호
개정	2012-09-2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3762호
개정	2014-02-2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626호
개정	2014-08-06	대외협력팀-269호
개정	2015-09-0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3885호
개정	2016-02-0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499호
개정	2016-03-04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1036호
개정	2017-03-30	대외협력팀-293호
개정	2017-12-0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138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과 제22조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 및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보호·육성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3, 2017. 3.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인 보호·육성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이라 함은 특별보조금, 선수·지도자 보호지원금, 장애인금,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체육장학금, 국외유학지원금, 복지후생금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 11. 5, 2002. 11. 9>
2. “특별보조금” 이라 함은 체육인 중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에 공이 있음에도 생활 형편이 곤궁하거나 절박한 사람 또는 그 유족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5. 9. 8>
3. “선수·지도자 보호지원금”이라 함은 상해보험지원비, 장기입원진료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4. “상해보험지원비” 라 함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에서 실시하는 강화 훈련에 참가한 선수·지도자와 국제대회에 출전한 임원의 상해보험 가입에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06. 1. 3>
5. “장기입원진료보조비” 라 함은 상해보험지원비 대상자 중 그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장기입원진료가 요구되는 사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6. “장애인금” 이라 함은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중 국제대회에서 국위선양을 위한 강화 훈련 또는 경기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향후 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생계 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06. 1. 3, 2006. 12. 11>
7.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이라 함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7. 3. 30>
8. “경기지도자연구비” 라 함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게 경기지도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9. “체육장학금” 이라 함은 운동 능력이 뛰어난 학생선수에게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10. “국외유학지원금” 이라 함은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 중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진 외국의 체육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귀국 후 우수체육인의 양성과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02. 11. 9, 2006. 12. 11, 2015. 9. 8>
11. “복지후생금” 이라 함은 현역 또는 은퇴 국가대표 선수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생활을 보조하거나, 체육 관련 분야 또는 사회 진출을 후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01. 11. 5, 개정 2006. 12. 11, 2015. 9. 8, 2017. 12. 8>

제3조 (관리운영 및 사업비)

- ① 이 사업은 공단에서 관리·운영한다.
- ② 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제4조 (심의의결)

- ①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 이사회(이하 “이사회” 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특별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삭제 <95. 10. 6>
 3.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특별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33조(특별장려금 지급)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사항
 5. 경기지도자 특별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6. ~ 8. 삭제 <95. 10. 6>

9.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3. 30>

② 삭제 <95. 10. 6>

제5조 (반환의무)

이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장애연금,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체육장학금, 복지후생금의 대상자와 그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은 금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5, 2017. 3. 30>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17. 3. 30>
2. 금액을 지급 받은 후 그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과·오급된 경우

제2장 특별보조금

제6조 (지급대상 및 추천)

① 특별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에 공이 있음에도 생활 형편이 곤궁하거나 절박한 체육인으로 한다. 다만, 경기지도자연구비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 9. 8>

② 지급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06. 1. 3>
2. 해당 가맹경기 단체장 및 시·도 지부장이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거쳐 추천한 사람 <개정 2006. 1. 3>
3.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

제7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특별보조금의 지급액은 1명당 1,000만원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6. 12. 11, 2017. 3. 30>

제7조의2 (특별대상자)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또는 경기지도자연구비를 받는 체육인으로서 1년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 의료비에 한하여 본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1명당 5,000만원 범위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11, 개정 2017. 3. 30>

② 특별대상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추천하되, 추천 시 담당 의사의 소견서 및 해당 병원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11, 개정 2017. 3. 30>

③ 국가대표선수로서 강화 훈련 또는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경기 중 불의의 사고 및 해당 사고의 직접적인 후유증으로 사망 시 해당 유족에게 최대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 및 경기 도중 외의 교통사고 등에 따른 사망 사고 시에는 제7조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28>

제8조 (지급시기)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3장 선수·지도자 보호지원금

제9조 (지급대상 및 추천)

① 선수·지도자 보호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해보험지원비의 지급대상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에서 실시하는 강화 훈련에 참가하거나 경기에 출전한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임원 포함)로 한다. <개정 2006. 1. 3>
2. 장기입원진료보조비의 지급대상은 상해보험지원비 대상자 중 그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장기입원진료가 요구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급대상자의 추천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30>

제10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상해보험지원비는 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로 하고, 이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조한다. <개정 2006. 1. 3>

② 장기입원진료보조비는 스포츠상해보험, 의료보험 등 각종보험에서 부담하는 입원진료보조비로 우선 부담하고 부족할 경우 입실료(해당 병원의 2인 1실 기준), 수술비, 치료비, 마취료, 의리기자재 사용료, 환자 본인 식대 등에 대해서는 이를 해당 선수의 계좌로 직접 보조한다. <개정 2006. 1. 3, 2007. 11. 28, 2017. 3. 30>

제11조 (지급기간)

① 상해보험지원비의 지급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02. 11. 9, 2017. 3. 30>

② 장기입원진료보조비의 지급기간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재신청에 따라서 초과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31, 2006. 1. 3>

③ 장기입원진료보조비의 지급신청은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상해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지연으로 인해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에 따른 지연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6. 1. 3>

제12조 (지급정지)

수혜자 중 국가대표선수 및 그 지도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상해보험지원비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4장 장애연금

제13조 (지급대상 및 등급 등)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은 장기입원진료보조비 수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사고 전 당초 보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운동 시 추가 발생한 운동 능력 상실과 관련한 장애에 대해서만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급을 확정한다. <개정 2006. 12. 11, 2017. 3. 30>

- 1. 1급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며 항시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
- 2. 2급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현저한 장애가 있어 경제적인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
- 3. 3급 : 부분적인 신체장애로 인하여 선수 활동이 불가능하며 생활 능력에 지장이 있어 장애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3. 30>

제14조 (추천)

장애연금 지급대상자는 해당 종목의 가맹경기단체장이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종합병원의 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거쳐 추천한다. <개정 2002. 11. 9, 2006. 12. 11>

제1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장애연금의 장애등급에 따른 매월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7. 10>

등급	지급액(원)
1급	600,000
2급	375,000
3급	225,000

제16조 (증서수여)

장애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장애연금증서를 수여한다.

제17조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장애연금의 지급기간은 원인 발생 후 지급이 확정된 달부터 사망한 달까지로 하며, 지급시기는 매월 20일

로 한다. <개정 2006. 12. 11>

제18조 (등급의 조정 등)

- ① 장애연금의 수혜자로서 상해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는 해당 가맹경기단체장, 이사장 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달라진 상해의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등급의 조정은 5년을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장애연금 수혜자는 매 5년마다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종합병원의 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거쳐 장애연금을 재신청 한다. <개정 2002. 11. 9, 2006. 12.11>

제19조 (수령자격의 상실 및 회복)

- ① 장애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령자격을 상실한다. 상실 전 보류된 장애연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개정 2017. 3. 30>
 1. 7개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소재가 확인되거나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장애연금의 수수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담보의 제공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양도·담보가 해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삭제 <2006. 1. 3>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중과실을 제외한 과실범은 제외한다.
- ②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재불명의 사실이 천재지변, 불법납치, 불법감금 등 본인의 정당한 의사에 반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면 수령자격이 상실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달로부터 장애연금 수령자격이 회복된다. <개정 2017. 3. 30>
- ③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령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재심에 의하여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청구한 달로부터 장애연금 수령자격이 회복된다.

제20조 (통보의무)

- ① 장애연금 수혜자가 사망하거나, 제19조에 따라서 장애연금 수령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거주지나 신상 등의 변동 시에는 지급대상자 또는 그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는 해당 사항과 관련 서류를 가맹경기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경유하여 공단에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1. 9, 2006. 12.11>
- ② 이사장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연금 수혜자의 거주지 및 신상변동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5. 10. 6>
- ③ 장애연금 수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보류된 연금은 장애연금 수혜자가 해당 사항 및 관련 서류를 통보·제출할 경우 지급될 수 있다. <신설 2002. 11. 9>

제21조 삭제

삭제 <95. 10. 6>

제22조 (지급의 중복제한)

- ① 장애연금과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중복될 경우에 장애연금은 초과되는 차액만을 지급한다.
- ②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 지정된 날부터 장애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 9. 8>

제5장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23조 (연금의 종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정금은 평가점수에 대한 연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11. 13>

2. 일시금은 평가점수에 대한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11. 13>
3. 장려금은 제31조제3항의 일시장려금과 제33조의 특별장려금을 말한다. <개정 2008. 11. 13>

제24조 (지급대상 및 추천)

- ① 연금의 지급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별표 1의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 1. 3, 2016. 2. 2>
- ② 연금 지급대상자의 추천은 해당 가맹경기단체장 및 국군체육부대장의 신청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추천한다. <개정 99. 11. 11, 2006. 1. 3, 2017. 3. 30>
- ③ 연금 지급대상 경기종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종목과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한다. <개정 2002. 10. 31, 2006. 1. 3, 2016. 2. 2>
- ④ 별표 1의 국제대회 입상 또는 선수나 지도자 대상 (성)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가맹경기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징계(자격정지 이상)가 확정되었을 경우 연금의 지급을 중지(자격정지의 경우 그 2배의 기간)하며, 메달 박탈 등 평가점수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금을 환수한다. <신설 2011. 9. 8, 개정 2016. 3. 4, 2017. 3. 30>
- ⑤ 제4항의 징계대상 선수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은퇴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자격회복과 관계 없이 그 지급을 영구 중지한다. <신설 2011. 9. 8>
- ⑥ 제4항 및 제5항의 연금지급 중지 및 환수 절차는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1. 9. 8>

제25조 (특별대상자)

- ① 공단은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이 인정하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선수를 특별대상자로 선정하여 연금 지급대상자로 할 수 있다.
- ② 특별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메달을 획득하거나 입상하여 연금 평가점수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평가점수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제26조 (입상실적 및 인원인정)

- ① 연금의 지급대상자가 획득한 메달 수 및 입상 실적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국제대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메달, 상장 또는 기록에 한한다.
- ② 단체경기(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종목, 개인경기 단체전 포함)의 경우에는 메달을 획득하거나 입상한 대회에 참가하여 제1항의 메달 또는 상장을 받거나 공식기록을 인정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1. 9, 2017. 3. 30>

제27조 (대회의 참가국 수)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제외한 단체경기(개인경기 단체전 포함)의 경우에 실제 출전국이 15개국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경기의 경우에는 해당 참가 세부종목 및 체급에 실제 출전국이 10개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예선을 거치거나 기준기록에 따라 참가하는 종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2. 11. 9, 2016. 2. 2, 2017. 3. 30>

제28조 (평가점수)

국제경기대회의 중요도에 따른 평가점수는 별표 1과 같다.

제29조 (평가점수의 가산)

- ① 동일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한 때에는 추가된 메달에 대하여 해당 평가점수에 20%를 가산한다. <개정 2006. 1. 3, 2006. 12. 11, 2016. 2. 2>
- ②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상이한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추가하여 획득한 때에는 추가메달에 대하여 해당 평가점수에 50%를 가산한다. <개정 2002. 10. 31, 2006. 1. 3, 2006. 12. 11, 2016. 2. 2>
- ③ 기본 경기종목인 육상과 수영에서 획득한 메달에 대하여는 평가 점수에 10%를 가산한다. <개정 2006. 1. 3, 2006. 12. 11>

제30조 (연금의 선택)

연금 지급대상자는 제23조의 월정금 또는 일시금 중 제24조의 추천서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선택한 월정금이나 일시금은 연금이 증가되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 3. 30>

제31조 (연금의 지급 및 지급액 산출방법)

① 연금은 입상 실적이 있을 때마다 입상 실적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월정금과 일시금은 평가점수 20점이 되는 때부터 지급한다.

③ 월정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 1. 3, 2006. 12. 11, 2017. 3. 30>

1. 선수의 월정금은 평가점수 30점까지는 10점당 15만원씩, 평가점수 30점 초과부터 100점까지는 초과점수 10점당 7만5천원씩, 평가점수 100점 초과부터 110점까지는 초과점수 10점당 2만5천원씩 부가하여 산출 지급하되,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농아인올림픽대회 금메달에 한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의 일시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초과점수가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농아인올림픽대회의 금메달에 따른 경우에는 10점당 500만원의 일시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 1. 3, 2008. 11. 13, 2016. 2. 2, 2017. 3. 30>

2. 삭제 <2008. 11. 13>

④ 일시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0. 7. 10, 2006. 1. 3, 2006. 12. 11, 2017. 3. 30>

1. 선수의 일시금은 평가점수 30점까지는 1점당 112만원씩, 평가점수 30점 초과부터는 1점당 56만원씩 부가하여 산출하고 일시금 수령 후 추가 메달 획득 및 입상 시 합산된 평가점수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개정 2000. 7. 10, 2006. 1. 3, 2008. 11. 13, 2017. 3. 30>

2. 삭제 <2008. 11. 13>

⑤ 월정금을 선택한 선수로서 외국에 이민하게 되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본인이 일시금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정금의 4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6. 1. 3, 2008. 11. 13, 2009. 7. 6>

제31조의2 삭제 <2001. 11. 5>

제32조 (증서수여)

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에는 연금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7. 3. 30>

제33조 (특별장려금 지급)

① 올림픽대회에 참가한 단체경기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금 외에 특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3, 2017. 3. 30>

② 선수 중 세계대학생경기대회·아시아경기대회·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또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를 획득한 사람으로서 평가점수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에는 450만원의 특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장려금을 받은 후 평가점수가 20점이 될 때에는 월정금 또는 일시금 선택 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다. 월정금을 선택한 사람에게에는 이미 지급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월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1. 11, 2000. 7. 10, 2006. 1. 3, 2008. 11. 13, 2017. 3. 30, 2017. 12. 8>

③ 제24조제3항의 경기종목과 산악 등 기타 종목에서 체육 활동을 통하여 특별히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50만원 범위에서 특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 9. 12, 2000. 7. 10, 2008. 11. 13, 2017. 3. 30>

[제목개정 2007. 11. 28]

제34조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월정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월정금의 산출에 영향을 주는 국제경기대회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04. 12. 2, 2006. 12. 11, 2014. 2. 20>

② 월정금은 지급이 확정된 이후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일시금과 장려금은 확정된 달의 말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2.20>

제35조 (준용규정)

월정금은 제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95. 10. 6>

제6장 경기지도자연구비

제36조 (지급대상)

- ①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국가대표선수 강화 훈련에 참가하여 해당선수 또는 팀을 직접 지도하고 메달 획득 및 입상에 공헌한 경기지도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서 국제대회라 함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회를 말한다.

제37조 (지급대상자 추천)

- ① 경기지도자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지급대상자의 추천은 해당 가맹경기단체장 및 국군체육부대장이 신청하고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추천한다. <개정 99. 11. 11, 2006. 12. 11, 2017. 3. 30>
- ② 공단은 제1항의 추천 내용을 유관기관 및 관련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제38조 (지급기준)

- ① 연구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 12. 11, 2017. 3. 30>
 1. 연구비는 해당 대회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으로써 매 10점 단위로 지급하되, 개인경기 및 단체경기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90점까지는 10점당 334만원씩, 평가점수 90점 초과부터는 초과점수 10점당 167만원씩 부가하여 산출 지급한다. (다만, 십만 원 미만은 버림) <개정 2000.7.10, 2002. 11. 9, 2006. 12. 11, 2008. 11. 13, 2017. 3. 30>
 2. 삭제 <2008. 11. 13>
- ② 지도한 선수 중 해당 대회에서 1개의 메달이 평가점수 10점 이상인 메달을 획득한 선수를 2명 이상 배출하였을 경우에는 각 선수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연구비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 3. 30>
- ③ 지도한 선수 또는 선수들이 해당 대회의 개인경기 종목 또는 2명 이상 단체경기 종목(동일선수, 동일인원으로 구성)에서 평가점수 10점 이상의 메달을 2개 이상 획득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점수 메달 1개분의 해당 연구비를 전액 지급하고 추가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비의 2분의 1 비율로 각각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02. 11. 9, 2017. 3. 30>
- ④ 장애체육인 분야 경기지도자는 동일 종목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세부 종목이 증가한 경우 출전한 세부 종목 수 분의 1 비율로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신설 2006. 12. 11>

제39조 (지급방법)

연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지급한다.

1. 연구비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 해당 지도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비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 3. 30>
3. 개인경기는 해당 지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에 해당되는 연구비 전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02. 11. 9, 2017. 3. 30>
4. 단체경기(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종목, 개인경기 단체전 포함)는 해당 지도자 2명 이내에서 해당 연구비 전액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해당 경기지도자가 3명 이상일 경우 2명에 해당되는 연구비 전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02. 11. 9, 2017. 3. 30>

제40조 (특별연구비)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600만원 범위에서 특별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 9. 12, 2017. 3. 30>

1.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의 성장과정에서 경기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준 공로가 인정되는 육성지도자
2.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체육진흥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육지도자

제41조 (지급제한)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30>

제7장 체육장학금

제42조 (지급대상)

체육경기에 자질이 풍부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며 전국규모 대회에서 상위 입상 실적이 있는 학생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43조 (추천 및 선정)

① 이사장은 제42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지급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한다. <개정 2006. 12. 11, 2017. 3. 30>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 3. 30>

제44조 (특별장학금 지급)

제42조 외에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선수로 선정된 학생과 학생으로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하는 선수 강화 훈련에 참가한 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11, 2017. 3. 30>

제45조(지급기준)

장학금 지급액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요청사항과 예산 등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1명당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이사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2. 11. 9, 2007. 11. 28, 2017. 3. 30>

제46조 (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장학금 수혜자의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 증서 수여 행사를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2. 11. 9, 2007. 11. 25>

② 전국체육대회에서 선정된 특별장학생에게는 대회장에서 직접 수여할 수 있다.

③ 선수 강화 훈련 참가자에게는 직접 수여할 수 있다.

제47조 (지급시기)

장학금은 매 분기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2분기분 또는 연간 지급분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 (지급중지)

① 장학생으로서 제42조에 규정한 자격이 박탈된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② 장학생으로서 신분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정에 따라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49조 (증서수여)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50조 (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학년도 초부터 학년도 말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대표선수로서 특별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선수 강화 훈련의 입촌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혜기간을 정한다. <개정 2006. 12. 11, 2017. 3. 30>

제51조 (업무의 위탁 등)

① 이사장은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관련 업무를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11, 2017. 3. 30>

② 삭제 < 2006. 12. 11>

제8장 국외유학지원금

제52조 (지원대상자)

- ① 국외유학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대상 국제대회에서 입상하여 별표 1에 따른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 중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 9. 8>
- ② 제1항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3. 30>
1.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 선양을 위해 현역 선수로서의 활동이 계속 필요한 사람
 2. 체육 이외의 분야에 유학하는 사람
 3. 그 밖에 이사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3조 (유학대상자의 추천)

제52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유학대상자의 추천은 해당 가맹경기단체장의 신청에 따라서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추천한다. <개정 2006. 12. 11>

제54조 (유학대상자 선정)

- ① 국외유학대상자의 선정은 제52조에 따른 추천자 중 별표 3의 시험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55조제3호에 따른 유학과정의 경우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육 외교 역량 강화 등 체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 11. 9, 2004. 1. 26, 2008. 11. 13>
1. 국제경기대회 입상성적 <신설 2004. 1. 26>
 2. 체육 분야 활동경력 및 기여도 <신설 2004. 1. 26>
 3. 유학 후 활동계획 및 활동가능성 <신설 2004. 1. 26>
- ② 외국어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은 성적을 취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02. 11. 9, 2008. 11. 13>

제55조 (지원기간)

- 지원 기간은 유학 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유학 과정은 1년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2, 2017. 3. 30>
1. 대학원 과정 : 2년
 2. 대학 과정 : 2~4년
 3. 단기 교육훈련 과정·연구과정 : 6개월~1년

제56조 (지원신청)

-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 연수기관이나 훈련기관의 입학 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유학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맹경기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경유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11>
1. 유학 할 교육기관, 연수기관 또는 훈련기관, 연구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1부
 2. 서약서 1부(별지 제5호서식)
 3. 재정보증서(연대보증) 1부(별지 제6호서식)
 4. 삭제 <2017. 12. 8>
 5. 해당 외국어 성적표 1부 <신설 2002. 11. 9>

제57조 (지원승인)

이사장은 제5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8조 (지원금 지급)

- ① 이사장은 제56조에 따른 국외유학자에게 국외유학에 필요한 입학금 및 등록금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의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에 따라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날 수대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1. 9, 2004. 12. 2, 2017. 3. 30>

② 제1항의 체재비 지급기간에는 유학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30일 이내의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2. 11. 9>

제59조 (지급절차)

① 이사장은 국외유학자의 첫 학기 학자금과 6개월분의 체재비는 해당교육기관의 입학일정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2. 11. 9>

② 국외유학자의 학자금 또는 훈련비는 해당 교육기관의 등록 전후에, 체재비는 6개월 단위로 하여 유학자의 신청에 따라서 지급한다. <개정 2002. 11. 9>

③ 항공료는 출국 및 귀국 시에 유학자의 신청에 따라서 지급한다.

④ 유학자가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령 즉시 이사장에게 수령사실(학자금은 영수증 사본첨부)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① 이사장은 국외유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유학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 3. 30>

1. 공단의 승인 없이 유학 대상국, 교육기관, 연수기관, 훈련기관 및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2. 이사장이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환수한다. 다만,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환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매월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에서 환수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하여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경비지급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1. 사망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장애인이 된 경우
4.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속적인 수학이 곤란하여 귀국한 경우
5. 그 밖에 환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7. 3. 30>

제61조 (신고의무)

① 유학자는 유학대상국에 도착 즉시 교육·연수 일정 및 거주지 등 유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를, 훈련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사람은 연수 또는 훈련지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0>

③ 유학자는 유학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귀국하고 이사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이 지연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유학자는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학결과 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또는 유학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보고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유학자는 유학기간 중의 질병 기타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고 상시 연락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0>

제62조 (지원금의 지급보류)

이사장은 제61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이행할 때까지 유학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제63조 (국외유학자의 사후관리)

① 유학지원을 받은 사람은 귀국 후 제55조 각 호의 지원 기간 이상 체육 분야에서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11, 2002. 11. 9, 2017. 3.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1. 귀국 후 국내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2.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3. 대학(원)의 해당 학위 미 취득에 따른 자비부담 유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 2002. 11. 9>
4. 그 밖에 체육 분야 활동이 곤란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개정 2002. 11. 9>

제64조 (기록의 유지)

이사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학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유학자의 교육이수 과정, 유학지원금 지급사항 등을 기록 유지한다. <개정 2017. 3. 30>

제9장 복지후생금

제65조 (복지후생금의 종류)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 또는 은퇴한 국가대표선수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복지후생금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2017. 12. 8>

1. 생활이 어려운 현역 국가대표선수의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 라 한다) <개정 2015. 9. 8, 2017. 12. 8>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육전문가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금(이하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이라 한다) <신설 2017. 12. 8>
3. 국내 대학원 진학 장학금(이하 “대학원 진학 장학금” 이라 한다) <개정 2017. 12. 8>
4. 체육 관련 분야 또는 사회 진출을 위한 국내 단기 전문교육과정 훈련비(이하 “단기교육훈련비” 라 한다) <개정 2017. 12. 8>

제66조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①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의 지급대상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지 못하는 현역 국가대표선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현역 국가대표선수” 란, 추천일 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른 해당 연도 국가대표선수를 말하며, 해당 연도 국가대표선수가 선발되지 않은 종목의 경우, 직전 연도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훈련을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실업스포츠단체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하며 공단의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 9. 8, 2017. 3. 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5. 9. 8>
 2.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가맹경기단체장,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06. 12. 11>
- ② 지급대상자는 해당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별지 제8호 서식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06. 12. 11>
- ③ 공단은 1명당 월 50만원씩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시기는 지원이 확정된 달부터 매월 20일로 한다. <개정 2006. 12. 11, 2015. 9. 8, 2017. 3. 30>
- ④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9. 8, 2017. 3. 30>

1. 선수생활을 중단하거나 취업한 경우
2.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지원금의 수혜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3.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가맹경기단체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으로부터 지급 중지 또는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06. 12. 11>

[제목개정 2015. 9. 8]

제66조의2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①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제2항의 추천 또는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우선 선정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의 소득 기준, 자격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3. 4, 2017. 12. 8>

②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이 때 추천자 또는 신청자는 지급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8의2호서식에 따른 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0>

1. 해당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추천
2. 지급대상자 본인의 신청
3. 지급대상자 본인을 위한 타인의 신청

③ 공단은 제2항의 추천 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1명당 월 50만원씩 1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이 확정된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 3. 30, 2017. 12. 8>

④ 삭제 <2017. 12. 8>

⑤ 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체육관련 교육, 훈련, 대회, 사회공헌 등 체육 전문성 발휘 활동에 참여하고 그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지원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8>

⑥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2017. 12. 8>

1. 삭제 <2017. 12. 8>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 수령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삭제 <2017. 12. 8>
4.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가맹경기단체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으로부터 지급 중지 또는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9. 8]

[제목개정 2017. 12. 8]

제67조 (대학원 진학 장학금)

① 대학원 진학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은퇴한 국가대표선수로서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며, 공단의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우선 선정한다. <개정 2008. 11. 13>

② 지급대상자는 해당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별지 제9호 서식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06. 12. 11>

③ 대학원 진학 장학금은 대학원 과정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학기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초 계획한 기간 내에 학업을 마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학업기간 3년 이내, 5학기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④ 대학원 진학 장학금은 학기 단위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매 학기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⑤ 대학원 진학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매 학기 이수 후 다음 학기 장학금 신청 시와 대학원 전 과정 이수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가맹경기단체,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경유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11>

1. 학기 이수 후 제출서류

- 가. 이수 학기 등록(입학)금 영수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나.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1부
- 2. 대학원 전 과정 이수 후 제출서류
 - 가.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 ⑥ 대학원 진학 장학금의 지급이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 1. 공단의 승인 없이 교육기관 또는 전공 분야를 변경한 경우
 - 2. 제5항의 서류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휴학한 경우
 - 4. 체육인으로서의 품위 훼손 등의 사유로 해당 가맹경기단체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장애인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지급 중지 또는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06. 12. 11>
 - 5.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B⁺이상(100점 환산 80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신설 2006. 1. 3>

제68조 (단기교육훈련비)

- ① 단기교육훈련비의 지급대상은 은퇴한 국가대표선수로서 체육관련 분야 또는 사회 진출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며, 공단의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 ② 지급대상자는 해당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별지 제10호서식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06. 12. 11>
- ③ 단기교육훈련비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00만원의 범위에서 입학금 및 등록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지원이 확정된 달부터 매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17. 3. 30>
- ④ 단기교육훈련비의 지급이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 1. 공단의 승인 없이 해당 교육기관 및 훈련분야를 변경하거나 10일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2. 매월 출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3. 제6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9조 (창업융자)

- ① 삭제 <2006. 12. 11>
- ② 삭제 <2006. 12. 11>
- ③ 삭제 <2006. 12. 11>
- ④ 삭제 <2006. 12. 11>
- ⑤ 삭제 <2006. 12. 11>

제10장 보칙

제70조 (사무처리)

이 규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는 공단이 수행한다.

제71조 (규정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에 각각 설치되었던 경기력향상연구연금기금, 체육장학기금을 체육인복지기금으로 통합한다.

제3조 (수혜대상 및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체육장학기금 및 체육인복지기금 수혜대상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금수혜 경기지도자 일시장려금 지급)

이 규정 개정당시 연금 수혜대상 경기지도자 8명에게는 연금지급을 중지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금액의 일시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 (경기지도자 보상규정)

경기지도자 보상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6조 (선수 일시장려금 지급)

제23조제2항에 의한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개를 획득하고 연금 해당점수 미달자에 대한 일시장려금 지급은 차기대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정은 198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83년 1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규정에 의한 연구비 지급대상에 해당한 자에게는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으로 추가된 경기종목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신규 수혜대상자는 과거 공적을 적용하여 재단이사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할 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전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대한체육회 실시 강화훈련 참가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9조제1항에 의한 주전, 후보선수의 구분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출전 선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90. 4.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올림픽경기대회 메달수상자의 국외유학지원내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92. 12. 26〉

이 규정은 체육청소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3.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연금수혜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세계선수권대회 및 단체종목(개인경기 단체전 포함)의 후보선수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의 평가점수를 인정한다.

② 기존 연금수혜자는 개정규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월정금 또는 일시금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 제31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금수혜자 중 평가점수 20점 미만인 준은장, 준동장 해당자 및 특별대상자가 월정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종전의 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준은장·준동장 해당자는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특별대상자는 월정금의 75배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기존 연금수혜자가 월정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100만원까지는 월정금으로 지급하고 100만원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는 10점당 37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칙

〈개정 94. 7. 27〉

이 규정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5. 10. 6〉

이 규정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8. 9. 12〉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9. 11.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제2회 세계군인체육대회('99.8.5-'99.8.8)때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0. 7.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기존 연금월정금 수혜자는 종전 평가점수를 인정하여 평가점수 20점부터 30점까지는 10점당 15만원씩, 평가점수 30점 초과부터 100점까지는 초과점수 10점당 7만 5천원씩, 평가점수 100점 초과부터 110점까지는 초과점수 10점당 2만 5천원씩 부가하여 산출 지급하되, 평가점수 20점 미만자에 대하여는 기존 월정금에 50%를 인상 지급하며, 평가점수 110점 초과부터 170점까지는 10점당 1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기존 연금일시금 수혜자가 재차 메달을 획득했을 경우, 제31조제4항의 기 지급액은 종전 평가점수 30점까지는 1점당 112만원씩, 평가점수 30점 초과부터는 1점당 56만원씩 부가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③ 제33조제2항에 의한 기존 일시장려금 수혜자는 종전 평가점수를 인정하여 평가점수 20점 도달 시에는 제33조제2항의 공제사항을 적용하되, 450만원의 일시 장려금을 기 지급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④ 기존 장애연금 수혜자는 종전 장애등급을 인정하여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0. 12. 11〉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11. 5〉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11. 9〉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에 의한 연금 지급대상선수 및 경기종목은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4. 1. 26>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12. 2>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아테네올림픽대회 입상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 1. 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장애인 선수의 연금지급은 장애인복지진흥회 연금지급규정의 취득점수에 조정치(1점당 275%를 곱한 점수)를 부여하여 연금지급액을 정한다. 다만, 조정치 부여 시 발생하는 1점 이하의 점수는 절상하여 처리한다.

②장애인 선수의 월정금 지급은 제31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06년 1월부터 지급한다. 다만, 연금일시금, 일시장려금의 지급 및 제29조에 정한 평가점수의 가산 적용은 향후 규정 제정 시까지 보류하고, 규정 제정 기간내에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③제6조, 제13조, 제36조, 제42조, 제52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의 장애인 선수에 대한 적용은 향후 해당 규정 제정 시까지 보류한다.

④제67조의 대학원 성적은 2006년 2학기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 12. 11>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관)

<개정 2007. 6. 28>

제3조 (다른 단규의 개정)

①다른 단규에서 종전의 정관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정관 시행후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관내 다른 조문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정된 정관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경륜·경정법」이 전부 개정('07.4.11)됨에 따라 공단 단규에서 종전의 법률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른 조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률 조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7. 11. 28>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 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제31조와 제38조는 2008년 베이징 장애인올림픽대회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장애인체육인 평가점수 재산정 적용)

기존 장애인체육인의 월정금 점수를 비장애인체육인의 점수체계와 동일하게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 7. 6>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9. 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내용은 2012년 런던올림픽 대회 입상자의 연금지급 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적용 이전 올림픽대회(장애인 및 농아인올림픽대회를 포함한다)의 은, 동메달 입상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평가점수를 조정하여 적용한다.

제2조 (기존 대상자에 대한 연금지급 경과조치)

'부칙제1조에 따라 조정된 평가점수는 월정금에 한해 지급하고, 일시금 및 일시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개정 2012. 9.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연금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31조 제3항 제1호 중 올림픽 금메달에 한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2000년 9월 이전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1993년 12월 이전 종전 규정에 의해 연금 대상자가 된 후보선수에 대해서는 월정금에 한하여 이 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해당 연금의 10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부칙

<개정 2014. 2. 20>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8. 6>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9. 8>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2. 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개정된 제24조, 제27조 및 별표1은 개정령안의 시행일 이후 개최되는 대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 3. 4>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 3. 30>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2. 8>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6. 1. 3, 2008. 11. 13, 2011. 9. 8, 2016. 2. 2>

국제대회 및 평가점수

구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위	5위	6위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90	70	40	8	4	2
농아인올림픽대회		90	70	40	-	-	-
세계 선수 권 대 회	4년 주기	45	12	7	-	-	-
	2~3년 주기	30	7	5	-	-	-
	1년 주기	20	5	2	-	-	-
선수권 대회 장애 인 세 계	4년 주기	30	8	5	-	-	-
	2~3년 주기	15	4	3	-	-	-
	1년 주기	7	2	1	-	-	-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 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10	2	1	-	-	-

1.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정식경기종목이 아닌 종목 중 검도, 롤러스케이팅, 수상스키, 수중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와 복싱의 월드컵복싱선수권대회는 상기 도표의 아시아경기대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94. 7. 27, 2002. 11. 9>
2. 축구의 월드컵축구대회, 육상의 국제 마라톤대회(전년도 말 세계랭킹 40위 이내 선수가 2명이상 참가한 대회이어야 함)는 상기 도표의 세계선수권대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3. 럭비풋볼의 아시아선수권대회는 금메달 7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의 평가점수 적용
4. 위의 평가점수는 1개의 메달(또는 성적)에 적용하는 평가점수이며, 2개 이상 획득한 자에게는 추가획득 메달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5. 빙상 세계선수권대회의 스피린트와 올라운드 경기에서 최종합계방식으로 메달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최종메달만 인정한다. <신설 2008. 11. 13>
6.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가 기회가 많음에 따라 도표와 같이 평가 점수를 적용한다. <신설 2016. 2. 2>

(별표 2) <개정 2002. 11. 9, 2006. 1. 3, 2016. 3. 4>

선수연금지급대상 경기종목

(비장애인체육 분야 47종목)

검도, 골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풋볼, 레슬링, 롤러스케이팅, 루지,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장애인체육 분야 31종목)

골볼, 론볼, 바이애슬론, 배드민턴, 보치아, 사격, 사이클, 수영, 스노보드, 스키, 승마, 아이스슬레지하키, 양궁, 역도(power lift), 요트, 유도, 육상, 장애인댄스스포츠, 조정, 좌식 배구, 축구(시각-5인제, 뇌성마비-7인제), 카누, 크로스컨트리스키, 탁구, 태권도, 트라이애슬론, 휠체어농구, 휠체어럭비, 휠체어컬링, 휠체어테니스, 휠체어펜싱

(별표 3) <신설 2008. 11. 13>

어학시험 및 기준표

구 분		주관	단기훈련과정 및 연구과정	대학, 대학원과정
1. 영 어	가. TEPS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990점 만점 기준 501점 이상	입학 허가 시 요구하는 성적 이상
	나. TOEIC	미국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	990점 만점 기준 625점 이상	
	다. TOEFL iBT	한미교육위원단	12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2. 중국어	HSK	중국국가한어 수평고시위원회	중등 C급 이상	
3. 일 어	JPT	駿台(순다이) 학원 (동경고등수험강습회)	990점 만점 기준 610점 이상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3급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어학시험 및 그 밖의 언어			공인 어학시험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별표 4) <삭제 2017. 12. 8>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 · 일시금 · 장려금 신청서

종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누적 평가 점수	연금 종류			
					월정금	일시금	장려금	
							일시	특별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월정금·일시금·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p><수집·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원활한 지급 도모 2. 항목: (필수) 종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소속, 학력 및 주요경력, 공적요지 및 공적사항, 계좌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 4.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영구적으로 보유·이용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정상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6. 동의 여부: (개인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p><제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받는 자: 전문 설문조사 업체 2. 목적: 수혜자 만족도, 생활실태, 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을 위한 각종 설문조사 3. 항목: 성명, 전화번호 4. 보유·이용기간: 제공받은 날로부터 처리목적 달성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그 이후 파기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동의 여부: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음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중 월정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하고 나면 추후에 선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정금을 수령하다가 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수령하고 있는 월정금의 4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매월 20일 공단이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드리며, 2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3.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중 월정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해당 국제대회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달까지만 지급됩니다. 4.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경기단체 신청, 체육회 추천, 공단 지급확정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절차의 소요로 인해 바로 월정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지급확정 시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월정금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5. 지급계획의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 변경하려는 계좌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경기단체로 변경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시중 모든 은행의 일반 예금계좌로 수령 가능합니다. 6.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자격은 7개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수수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담보의 제공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상실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경기단체 및 체육회를 경유하여 공단으로 통보하여 주셔야 합니다. 만일 통보하지 않으시거나 늦게 통보하시면 지급이 일시보류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2. 8>

유학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인 적 사 항	성명(한글/영문)	종목	주민등록번호
	소속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국제대회 입상실적			
최종출신학교	년도	학교	학과 졸업 중퇴 재학
유 학 계 획	유 학 기 관	기 관 명	연 락 처
		소 재 지	
	유 학 기 간	유 학 과 정	
	전 공 분 야		
유 학 목 적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56조에 따라 유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56조에 따라 위 사람을 국외유학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 직위(직급) 조사자 (서명 또는 인)

대한체육회장 귀하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56조에 따라 위 사람을 국외유학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직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서약서 1부 2. 재정보증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p>1. 수집·이용 목적: 국외유학지원금 지급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원활한 지급 도모</p> <p>2. 수집·이용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성명, 종목,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및 주요 경력, 과거 포상기록, 유학계획 (기관명, 기간, 전공 등), 계좌정보, 외국어시험 성적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p>3. 수집·이용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p> <p>4.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영구적으로 보유·이용됨</p> <p>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국외유학지원금 지급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정상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p> <p>6. 수집·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p>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 8. 6, 2017. 12. 8>

서 약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본인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외유학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연대보증인의 연서로서 서약합니다.

1. 유학기간 중 대한민국의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선진외국의 체육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고 귀국하여 체육지도자로서 체육인재를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 체육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유학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겠으며 유학기간 중 귀국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르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수집·이용 목적: 국외유학지원금 지급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원활한 지급 도모
2. 수집·이용 필수항목: 연대보증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3. 수집·이용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
4.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영구**적으로 보유·이용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국외유학지원금 지급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정상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년	월	일
서 약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대보증인	생 년 월 일	성명	(인감도장 날인)
	주 소		
	<u>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u>	<u>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u>	
	<u>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u>	<u>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u>	
연대보증인	생 년 월 일	성명	(인감도장 날인)
	주 소		
	<u>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u>	<u>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u>	
	<u>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u>	<u>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u>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8의2호서식) <신설 2015. 9. 8, 개정 2017. 3. 30, 2017. 12. 8>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지급대상자 [] 추천서 [] 신청서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종목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급여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66조의2에 따라 위 사람을 전환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 직책 조사자 (서명 또는 인)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66조의2에 따라 위 사람을 전환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66조의2에 따라 위 사람을 전환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 [] 타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p>1. 수집·이용 목적: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지급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원활한 지급 도모</p> <p>2. 수집·이용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성명, 종목,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급여, 휴대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 (사회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건강보험 관련 정보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p>3. 수집·이용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p> <p>4.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영구적으로 보유·이용됨</p> <p>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지급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정상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p> <p>6. 수집·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 style="text-align: center;">(고유식별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p>
구비서류	<p>1. 활동계획서(활동목표, 지원금 사용계획 등) 1부</p> <p>2. 주민등록등본 1부</p> <p>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p> <p>4. 건강보험증 1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금액 확인 가능) 1부</p> <p>5. 통장사본 1부</p>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06. 12. 11>

